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26-1호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6년 2월 23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-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소속 직원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비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(안 제2조)
- 나. 처분대상 및 종류(안 제3조)
- 다. 처분의 효력(안 제4조)
- 라. 처분사유(안 제5조)
- 마. 이의신청 등(안 제6조)
- 바. 심사위원회(안 제7조)
- 사. 심의결과 및 처분방법(안 제8조 ~ 제9조)
- 아. 기록 및 유지·관리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법인 및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3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(참조 : 의정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

다. 주소 및 전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사항

가. 보내실 곳: 성동구 고산자로 266 (행당동), 성동구의회 의정팀

나. 문의처

○ 전화: 02-2286-6452

○ 팩스: 02-2286-5948

○ 이메일: yun0201@sd.go.kr